

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

1. 경 과

- 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 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규칙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4조”를 “제6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제60조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60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